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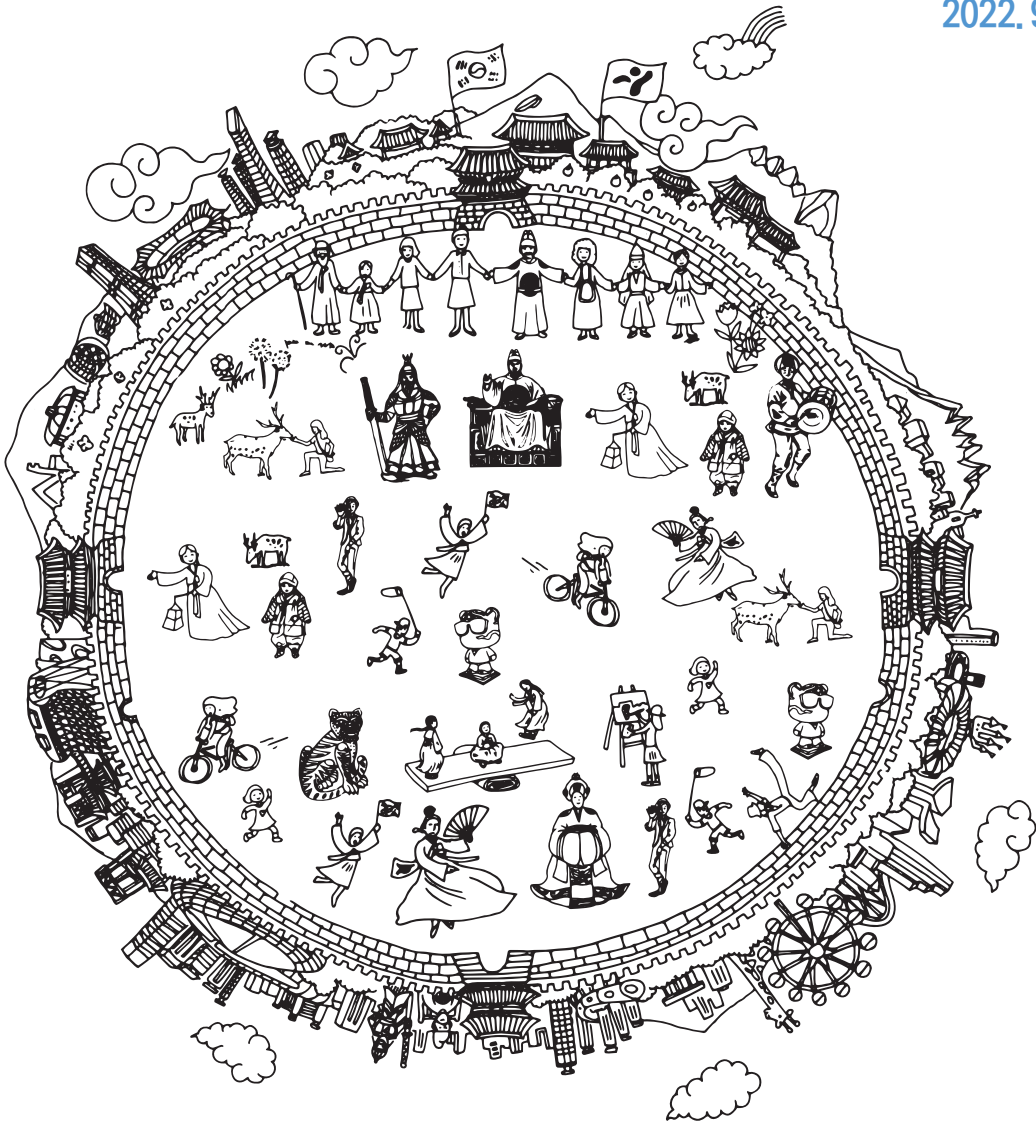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811호
2022. 9. 6.(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조 례]

제8451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자치법규**[조 례]****◆ 서울특별시조례 제8451호****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2년 9월 6일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주택공간위원회

9. 도시계획균형위원회

제33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주택균형개발위원회”를 “주택공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균형발전본부”를 “미래공간기획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도시계획공간위원회”를 “도시계획균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미래공간기획관”을 “균형발전본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 조직개편(2022. 8. 19.자) 취지를 반영하고, 상임위원회 간 직무정체성과 의정활동 범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부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한편, 이에 맞춰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주택균형개발위원회를 주택공간위원회로, 도시계획공간위원회를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, 미래공간기획관을 주택공간위원회의 위원회로, 균형발전본부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으로 각각 조정함(제32조제8호 및 제9호,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)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